1970년 싱가포르 통화청법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입법 과정

이 법안은 1970년 은행법 개정도 함께 다룬 회기에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970년 7월 22일 고켕스위(Goh Keng Swee)는 새 은행법안(Banking Bill)의 제2독회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업의 인가와 규제를 규정하고, 1958년 말레이시아 은행령(Banking Ordinance)과 1965년 그 개정법을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1] 싱가포르 통화청 법안(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Bill)도 같은 회기에 뒤따랐습니다.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의 기술에 따르면 고켕스위는 1970년 7월 22일 이 법안을 제1독회에 상정했고, 의회는 1970년 9월 2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2] *BiblioAsia*의 기술도 마찬가지로 1970년 9월 통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3]

GIC의 공식 역사서는 다른 날짜를 제시하며, 의회가 1970년 12월 이 법을 비준했다고 기술합니다.[4] 이 차이는 아마도 통과와 시행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1970년 12월 26일 시행되었고, 통화청에 배치된 정부 직원들은 1971년 1월 1일 통화청 소속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5] 금융센터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날짜는 통화청이 업무를 시작한 날이며, 통화청 스스로는 이를 1971년 1월 1일로 제시합니다.[6]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명칭의 선택

새 기관은 의도적으로 '통화청(monetary authority)'이라고 불렸습니다. 고켕스위는 기관 설립을 주도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받아 준비된 법률 초안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이 기관이 통화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명칭을 고집했습니다.[7] 그가 보기에 중앙은행이란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통화청은 준비자산 관리에서 은행 감독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의 다른 모든 수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화폐를 찍어 내는 권한은 엄격한 준비 규칙에 묶인 기관에 남았습니다.

1970년 8월 고켕스위의 뒤를 이어 재무장관이 된 혼수이센(Hon Sui Sen)은 의회에서 이 분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통화위원회의 "자동 메커니즘"이 "싱가포르달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통화청이 펴낸 기념 역사서는 같은 요지를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목적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 내지 않을 것"이라고 대중을 안심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8] 1971년 IMF 조사단은 통화청과 자율적 통화위원회의 결합을 "흥미로운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9]

기능과 지배구조

1970년 법은 흩어진 부서들이 수행하던 기능을 통화청에 부여했습니다. 통화청 자체의 요약에 따르면 이 법은 통화청에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부문을 규제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통화청은 정부의 은행 역할을 했고, 외환관리를 집행했으며, 대외준비자산을 보유·관리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과 금융회사를 감독했습니다.

지배구조는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7인 이사회를 두었습니다.[10] 혼수이센은 1971년 1월부터 1980년 7월까지 초대 의장을 지냈습니다. 직업 관료인 마이클 웡팍숑(Michael Wong Pakshong)은 1970년 12월부터 1981년 2월까지 초대 청장(managing director)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냈습니다.[11] 2003년 개정으로 재무장관 이외의 장관도 통화청 의장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내각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장과 4명 이상 13명 이하의 다른 이사를 두도록 규정합니다.[12]

따라서 통화청은 분데스방크나 이후의 유럽중앙은행이 독립적이었다는 의미에서 독립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통화청은 관료들로 구성되고 장관들이 지휘하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었습니다. 통화청의 신뢰성은 통화청을 통제하는 정부의 규율과 통화위원회를 구속하는 규칙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이 편 제II장에서 서술한 싱가포르의 정치체제에 부합했습니다. 그 체제에서는 단일 집권당이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장기적 경제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첫 10년간의 준비자산 관리

새 통화청은 준비자산과 함께 이를 관리하던 관료들도 물려받았습니다. 외환관리국(Department of Exchange Control)과 해외투자국(Department of Overseas Investment)을 합쳐 만든 투자·외환관리국(Investments and Exchange Control Department)은 이후 국제국(International Department)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13] 통화청은 처음부터 수익을 목표로 준비자산을 투자했습니다. GIC의 공식 역사서는 이 접근법을 당시 통화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이었다고 묘사합니다. 통화청은 파운드화와 미국달러에서 독일 마르크, 스위스프랑, 일본 엔으로 분산을 계속했습니다. 1971년 8월 미국이 금 태환 창구를 닫을 때까지 통화청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미국달러를 금으로 교환했습니다. 그 뒤 1970년대 나머지 기간 내내 통화청은 금의 순매수자로 남았습니다.[14]

이 체제는 정부가 장기 투자를 통화 관리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80년 고켕스위는 리콴유(Lee Kuan Yew) 총리의 요청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검토는 1981년 준비자산의 장기 관리를 새로 설립된 싱가포르정부투자공사(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로 이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15] 통화청은 통화정책에 필요한 공식 외환 보유액을 계속 보유했습니다. GIC와 투자·통화 관리의 분리는 제D편에서 살펴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보험 감독과 증권 감독의 통합

1970년 법은 통화청에 은행과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14년 동안 통화청은 금융감독의 다른 분야들을 흡수했습니다. 1977년 4월 정부는 보험업 규제를 통화청 소관으로 옮겼습니다. 1984년 9월에는 1973년 증권업법(Securities Industry Act)에 따른 규제 기능이 뒤따랐습니다.[16]

이러한 이관으로 싱가포르는 이 모델이 널리 퍼지기 훨씬 전에 통합 규제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리셴룽(Lee Hsien Loong)은 2001년 통화청 30주년을 맞아 통화청 의장 자격으로 연설하면서, 통화청을 통화정책 책임과 금융부문 전체에 대한 감독을 겸하는 세계 유일의 기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통화청이 "이것이 국제적으로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통합 감독기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17] 영국은 1990년대 말에야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만들었고, 스위스는 2009년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을 구성했습니다.[18] 오늘날의 통합 구조는 제E편 제I장에서 서술합니다.

흔한 오해

싱가포르 통화청은 1971년 설립 때부터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었다고 흔히 설명됩니다. 그러나 처음 31년 동안 통화청은 은행권 발행권이 없는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은행권 발행은 통화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of Currency)의 몫이었습니다. 2002년 10월 1일의 합병으로 비로소 통화청은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권한을 얻었고, 완전한 의미의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이 구분은 설립자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화폐 창출을 다른 통화 기능에서 분리하는 것이 싱가포르달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

1. Legal Wires, "Banking Bill"(legal-wires.com), 1970년 7월 22일 제2독회 토론(Parliament 2, Session 1, Sitting 4) 요약: 고켕스위가 "to provide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the business of banking"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법안은 Banking Ordinance, 1958과 Banking (Amendment and Extension) Act, 1965를 폐지함. ↩

2.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Infopedia*,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1970년 7월 22일 고켕스위의 발의로 제1독회; 1970년 9월 2일 법안 통과. ↩

3. Barbara Quek, "The Making of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BiblioAsia*, 2022년 10–12월: 싱가포르 통화청 법안은 1970년 9월 의회를 통과했고, MAS는 1971년에 설립됨. ↩

4. GIC, *Bold Vision*, 제6장, "A Productive Interregnum"(boldvision.gic.com.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AS법은 "was ratified by parliament in December 1970". ↩

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LawPlayer가 게재한 현행 개정본, lawplayer.com/sg/act/MASA1970,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 operation from 26 December 1970"; s. 18(1): "On 1 January 1971, such persons, as the Minister may decide, who were employed by the Government"는 통화청 소속으로 이관됨. ↩

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ur History"(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의회는 1970년 싱가포르 통화청법을 통과시켜 MAS에 "authority to regulate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in Singapore"를 부여함; MAS는 1971년 1월 1일 설립됨. ↩

7. GIC, *Bold Vision*, 제6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고켕스위가 MAS 설립을 주도함; IMF가 기술 자문과 법률 초안을 제공함; 고켕스위는 이 기관이 통화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monetary authority"라고 명명함. ↩

8. Barbara Quek, "The Making of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BiblioAsia*, 2022년 10–12월, Ignatius Low, Fiona Chan and Gabriel Chan, *Sustaining Stability: Serving Singapore*, Singapore, Straits Times Press, 2012 인용: 중앙은행은 "would not freely print money according to its whim". 또한 Barbara Quek, "The Making of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BiblioAsia, 2022년 10–12월, 혼수이센 인용: 통화위원회의 "automatic mechanism"은 "of great psychological importance in maintaining confidence in the Singapore dollar"; Wikipedia, "Hon Sui Se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0년 8월 11일부터 1983년 10월 14일까지 재무장관 참조. ↩

9. GIC, *Bold Vision*, 제6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1년 IMF 조사단은 이 체제를 "an interesting innovation"이라고 평가함. ↩
10. GIC, *Bold Vision*, 제6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AS법은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7인 이사회를 설치함; 2003년 개정으로 어느 장관이든 MAS 의장을 맡을 수 있게 됨. ↩
1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ur History"(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혼수이센(1971년 1월 – 1980년 7월)과 마이클 웡팍숑(1970년 12월 – 1981년 2월)을 포함한 역대 의장 및 청장. ↩
1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LawPlayer가 게재한 현행 개정본, lawplayer.com/sg/act/MASA1970,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 7(1) 및 (3): 이사회는 "responsible for the policy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and business of the Authority"; 내각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장과 "not less than 4 and not more than 13 other directors". ↩
13. GIC, *Bold Vision*, 제6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준비자산 담당 부서는 처음에 외환관리국과 해외투자국을 합친 Investments and Exchange Control로 불렸고, 이후 International Department가 됨. ↩
14. GIC, *Bold Vision*, 제6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AS는 처음부터 투자 접근법에서 "pretty radical"했음; 독일 마르크, 스위스프랑, 일본 엔 보유를 늘림; "Up to the closing of the gold window in August 1971, MAS was constantly alert to opportunities to redeem its US dollars for gold"; "MAS was a net buyer of gold through the 1970s"; 1971년 파운드화 협정이 2년 연장된 뒤 영국은 "eventually" 최소 파운드화 보유비율을 36%로 낮추는 데 동의함. ↩
15. GIC, *Bold Vision*, 제6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80년 고켕스위는 리콴유의 요청으로 MAS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그 결과 GIC가 MAS로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터 준비자산 관리를 넘겨받음; GIC, *Bold Vision*, 제3장: GIC는 1981년에 설립됨. ↩

1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ur History"(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7년 4월 보험업 규제가 MAS 소관으로 옮겨짐; 1984년 9월 Securities Industry Act(1973)에 따른 규제 기능이 MAS로 이관됨. ↩

17. Lee Hsien Loong, "Credibility, confidence, dynamism: MAS in the new economic and financial landscape", MAS 30주년 기념 회의 연설, 2001년 7월 20일, *BIS Review* 67/2001, 1–2면: MAS는 "is the only institution in the world that combines responsibility for monetary policy with supervisory oversight of the entire financial sector"; "MAS was an integrated supervisor long before this became internationally fashionable"; 1977년부터 보험 감독, 1984년부터 증권 감독. ↩

18. Wikipedi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ecurities and Investments Board는 1997년 10월 28일 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명칭을 바꿈;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2001년 12월 1일 시행됨. FINMA: 위의 제네바 편에 관한 주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